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423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개정안)

[제10차 개정판]

2015. 5. 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명 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개정차수	10
				제정일자	1992.12.30
				승 인 자	김재영
담당부서	항공안전과	담당직책	항공안전과장	제 정 자	

개 정 표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작성자	승인자
1	1992.12.30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047호(신규제정)		
2	2000.02.10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131호		
3	2001.02.2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137호		
4	2006.07.05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25호	김종천	신동춘
5	2006.10.23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232호	김동공	신동춘
6	2009.08.17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29호 (훈령 일몰제 적용)	최전수	우예종
7	2010.03.22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52호	이경수	최정호
8	2013.02.04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390호	민병우	손명수
9	2013.09.04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02호 (부처 명칭 및 관할구역 조항 변경)	김동공	김재영
10	2015.5.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23호 (장치 직권말소 및 패러글라이더 신고번호 부여 방법 신설 등)	김성태	이성용
11				
12				
13				
14				
15				

- 목 차 -

제1조(목적)	1
제2조(신고)	1
제3조(비행장치의 보관처)	1
제4조(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	1
제5조(신고번호의 부여방법)	1
제6조(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1
제7조(신고번호 표시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2
제8조(비행장치의 제시요구)	2
제9조(변경신고)	2
제10조(이전신고)	2
제11조(최초신고일의 기재)	3
제12조(말소신고)	3
제13조(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3
제14조(비행장치신고대장)	4
제15조(신고대장의 관리)	4
제16조(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4
제17조(재검토 기한)	4
부칙 (시행일)	5
별표1(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	6
별표2(신고번호의 표시장소)	7
별표3(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8
별표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9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5. 5. 1) (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2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이하 “비행장치
소유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관할구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
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행장치의 보관처) 비행장치의 보관처라 함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
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의 번호는 S(SEOUL)에
해당년도 및 접수번호(예:제 S13-01호)를 표기한다.

제5조(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
되, 끝번호를 홀수로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한다.

② 제1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 신고번호의 표시장소는 별표 2와 같다.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 ④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신고번호 표시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비행장치 소유자는 제6조에 의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신고번호 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행장치의 제시요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행장치 소유자에게 대하여 당해 비행장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비행장치 소유자가 변경된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이전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관처 변경으로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가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이전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최초신고일의 기재) 청장은 비행장치의 이전·변경신고로 인해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증명서 발행연월일의 기재란 아래에 최초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말소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비행장치 소유자는 말소신고를 하는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말소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앞면)에 붉은색으로 “X”를 표기하고, 뒷면 해당란에 말소 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① 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 ② 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행장치신고대장) ① 청장은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월·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 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신고대장의 관리) 신고대장을 포함한 비행장치 신고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대장 : 말소 신고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서 접수일부터 5년

제16조(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① 청장은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부 칙

-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0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초경량비행 장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 09 · 8 · 17 >

-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0 · 3 · 22 >

-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3 · 2 · 4 >

-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3 · 10 · 1 >

-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5 · 5 · 1 >

-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

구 분			신 고 번 호
초 경 량 비 행 장 치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S1001 - 1999
		타면조종형	S2001 - 2999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S3001 - 3999
	동력패러글라이더		S4001 - 4999
	기구류		S5001 - 5999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S6001 - 6999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S7001 - 7999
		무인비행선	S8001 - 8999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행글라이더		S9001 - 9999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별표 2]

신고번호의 표시장소

구 분		표 시 장 소	비 고
동력비행장치 - 체중이동형 - 타면조종형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1.신고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신고번호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신고번호를 동체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번호의 윗부분이 동체 좌측을 향하게 표시한다.
행글라이더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하네스에 표시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동체 아랫면,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캐노피 하판 중앙부 및 하네스에 표시	
기구류		선체(Balloon 등)의 최대 횡단면 부근의 대칭되는 곳의 양쪽면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거리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인비행선·무인회전익비행장치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별표 3]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구 분		규 격	비 고
가로세로비		2 : 3의 비율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세 로 길 이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cm이상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15cm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cm이상
선의 굵기		세로길이의 1/6	
간 격		가로길이의 1/4이상 1/2이하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별표 4]

접수번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한	
※				7 일	
비 행 장 치	종 류			신고번호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작년월일	
	보 관 처				
소 유 자	성 명 · 명 칭				
	주 소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 교 부 신 청 사 유					
<p>상기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주소 성명 · 명칭</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 울 지 방 항 공 청 장 귀 하</p>					
<p>* 구비서류</p> <p>1. 훼손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p> <p>2.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p> <p>* 작성시 유의사항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p>					